

재입학에 관한 규정

1996.03.01.제정	1998.09.01.일부개정	2001.08.27.일부개정	2001.12.01.일부개정
2005.06.01.일부개정	2006.03.01.일부개정	2016.06.16.일부개정	2018.07.23.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3.11.13.일부개정	<u>2024.02.28.일부개정</u>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2조에 따라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입학이라 함은 학칙에 의해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제적전의 학적을 회복하여 다시 입학함을 말한다. (개정 2023.11.13.)

제3조(신청시기 및 대상) ① 재입학 신청 대상은 자퇴 또는 제적된 일자가 재입학하려는 학기의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23., 2023.11.13., 2024.2.28.)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매학기 개시전 정해진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재입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3., 2021.6.1., 2023.11.13.)

[본조 제목 개정 2016.6.16.]

제4조(절차 및 허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재입학신청에 대하여 교무처의 심의 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학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단, 징계제적자의 재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7.23., 2021.6.1., 2023.11.13.)

② 재입학은 학년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입학 학기별로 산정된 총 여석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3.11.13.)

1. 1학기: 전년도 4.1.부터 9.30.까지의 3~4학년 제적자수

2. 2학기: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3.31.까지의 3~4학년 제적자수

③ 재입학 신청자수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학기별 여석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총 평점평균이 높은 사람, 총 취득학점이 많은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11.13.)

④ 제적당시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된 경우는 학칙 경과조치의 소속변경 기준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23.11.13.)

제5조(학점인정) ①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재학시 기 취득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취득학점을 재사정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학부(과)에서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학적회복) 재입학에 따른 학적회복에는 제적전의 학점, 성적, 휴학기간 등을 포함하고 학사 경고 횟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6.)

제7조(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6.3.1.]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